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설계공모지침서

2015. 0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목 차

1. 사업개요
2. 응모방법
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4. 심사시 불이익 처분기준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기준
6.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7. 기 타
8. 서 식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강 남북에 산재해있는 청·장년 창업센터를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 본관동을 서울창업허브로 개보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비 창업가, 전문가, 투자자 등이 한곳에 모이는 창업 네트워크 및 허브를 조성하고 아울러 동 부지에 산재해 있는 6개동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1.2 설계공모 목적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설계(안)을 선정하여 본관동 서울창업허브센타에 입주하게될 창업관련 업체에게 제공하고, 또한 동 부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동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임

1.3 사업(공모) 개요

- 1) 용역명 :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 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3) 대지위치 : 마포구 공덕동 백범로 31길 21
- 4) 대지면적 : 29,095㎡
- 5)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7,753㎡
- 6) 개보수 사업내용(기존 공공 업무시설을 창업허브등의 창업용 업무시설로 변경)
 - ① 보수범위 : 지하1층, 지상10층 17,753㎡
 - ② 보수 착안사항
 - 구조 : 설계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실시, 내진구조확인 보강 필요
구조보강시 건축설계와의 연관사항, 즉 재료마감사항,평면계획,기둥, 보,스라브와의 보강관계를 검토 필요
 - 외부 : 외장 누수확인 후 보수 또는 외장 교체가능,
AL창호 전면교체 또는 보강후 사용가능
캐노피 부분 전면, 측면 보수
 - 내부
 - 바닥 : 보수후 사용, 일부 사무용 OA Floor 시공이 권장됨
 - 벽체 : 웬코일 박스 전체교체, 경량칸막이 해체
 - 천정 : 석면 흡음텍스이며 전면교체

- 공용부위
 - 1층 로비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함.
 - 화장실은 전면교체, 엘리베이터는 내부 인테리어 교체등 필요
 - 계단실은 보수후 사용하고 벽체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
 - 지하 기계실, 전기실 등은 장비교체후 마감 보수

- 전등 전열부분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실시
- 통신설비,방송,인터넷,방범설비 등은 신규시설 용도에 맞도록 반영
- 설비 사용상태에 따라 전면교체 또는 보수사용

7) 마스터플랜 계획내용

- 입지여건 분석 및 수요예측:사업부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도입기능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도입기능을 위한 차량 및 유동인구 등 수요예측
- 교통계획 및 주차장운영 방안, 조경계획, 동선계획
- 신축규모 및 배치, 도서관 및 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규모 및 배치, 규모,색체 등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차도 보행로 주차장,가로광장,데크공간,휴게공간,옥상정원,단차처리방안
- 기타 조경 구조물 포장,식재,조명계획
- 공동사용시설 범위 및 시설기준(경비실,수도,전기,가로등,식당)

8)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아현재정비촉진지구

9) 공 사 비 : 18,038,백만원(부가세 포함)

10) 설 계 비 : 904,913천원(부가세 포함)

11) 설계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공휴일 포함)

12) 사업추진 계획

추진일정	추진사항	비고
2015. 04. ~ 2015. 08.	기본 및 실시설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공휴일 포함)	
2015. 10. ~ 2016. 09.	공사시행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1.4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비고
설계공모 시행공고	2015.01.05(월)		
응모신청서 등록	2015.01.08.(목) ~01.09(금)	근무시간내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질의기간	2015.01.14(수) ~01.15(목)	질의방법 :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글쓰기 ※ 제목은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질의서 제출”로 기재	
질의응답	2015.01.23(금)	회신방법 : 본부 홈페이지 ※ 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재로 별도의 서면회신을 갈음함	
공모안 제출	2015.03.18(수) (17:00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13층) ※ 제출대상 : 응모신청 등록한 업체	
공모안 평가	2015.03.25(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2015.03.31(화)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공지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시상	2015.04. 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2. 응모 방법

2.1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요건

- 1)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자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의 (가), (나)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및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 교통 및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 (가)(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가능하며, 상호 자격 보완을 위해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 공동응모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3 응모 신청서 등록

- 1) 등록기간 : 2015. 01. 08(목) ~ 01. 09(금)
- 2) 등록처
 -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2) 주 소 : 중구 천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3층
 - (3) 전화번호 : (02)3708-2652(담당자 : 정호기)
- 3)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서식 1)

(2) 공동 응모시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2)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서식 10)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3)

(3)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자격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및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필증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 교통 및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필증 사본 각 1부

(4)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5)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유의사항

(1) 공동 응모인 경우 상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 서류 전부를 제출

(2) 등록기간 중 상기 등록처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

2.4 질의응답

1) 질의기간 : 2015. 01. 14(수)~01.15(목)

2) 질의방법 : 질의기간 내 별첨 “서식 4” 를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이하 홈페이지)에 글쓰기로 질의

(1) 홈페이지 :

- <http://infra.seoul.go.kr>→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소통방→현장자료실
- 제목은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질의서 제출” 로 기재

(2) 유의사항 :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

3) 응답방법 :

(1) 일자 : 2015. 01. 23(금)

(2) 방법 :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재로 별도의 서면회신을 갈음함

4)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에 우선한 효력을 갖는다.

2.5 제공도서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 열람(건축도면)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복지시설과 정호기(02-3708-2652)

3.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3.1 공모안 제출 방법

- 1) 일자 : 2015. 03. 18(수) 17:00까지 건축부 출입문 진입완료
- 2)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3) 제출서류
 - (1)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서식5)
 - (2) 제출도서
 - ① 심사용 설계도판 2매(A0)
1매 : 서울창업허브 조성 계획, 1매 : 마스터플랜 계획
 - ② 설계도면 20부
 - ③ USB 1set
 - 3차원이미지 스케치업 작업파일(이미지별 별도 파일로 작성)
 - “①”, “②” 파일자료(① : jpg파일, ② : pdf파일로 작성)
- 4) 유의사항
 - (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와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능
 - (2)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 (3) 작품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제한
 - (4)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원칙은 전 설계공모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응모 제출도서는 발주자 확인 후 백색종이로 도판, 도면 및 CD를 별도 포장으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 ②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응모 제출도서는 발주자 임의의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익명 관리한다.

3.2 공모안의 작성기준

- 1) 공모안은 별첨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작성한다.
- 2) 공통사항
 - (1) 모든 제출도서는 무채색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단, 설계도면의 3차원이미지는 1컷에 한하여 색채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2) 모든 제출도서의 글씨체는 “HY전고딕” 을 사용한다.

- (3)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4)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5) 모형은 제출하지 않는다(도판 등에 모형이미지 삽입을 금함)
- 3) 3차원이미지(1층로비 실내투시도 이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성 기준
- (1) 3차원이미지는 재질, 질감, 색상, 나무, 사람 등의 모든 요소를 스케치업(버전6.0이상)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 사용은 불허한다.
 - (2) 3차원이미지는 작품 접수시 각 이미지별 별도 **작업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파일명 예시 : 설계도서_10page.skp, 설계도판_1)
 - (3) 제출된 파일을 스케치업프로그램(버전6.0)으로 export한 이미지가 제출도서의 3차원이미지와 상이한 경우 공모지침 위반으로 간주한다.
 - (4) 3차원이미지는 5컷 이내로 제한한다(A0 1면당)
 - 5컷 내에서 설계도판과 설계도면에 중복 사용 가능
 - 3차원 이미지는 개념도 표현에 사용할 수 없다.
- 5)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 기준(작성분량 : A0 2매)
- (1) A0(841mm×1189mm)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세로가 되도록 작성한다.
 - (2)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 압축 스티로폼판(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3) 도판에 사용되는 축척은 임의로 한다.
 - (4) 도판에 사용하는 모든 글씨체는 “HY견고딕” 체로 제목 40point, 부제목 25point, 설명 15point로 표현한다.
- 6)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 (1) 규 격 : A3(가로420mm×세로297mm) 크기로 좌측을 접착제로 첩하여 제출(단변좌첩)
단, 2페이지는 마스터플랜용도로 A2사이즈로 접어서 편철가능함
 - (2) 표 지 :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만 기재
 - ①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 ② 글자크기 48포인트, 글씨체 “HY견고딕” ,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3) 분 량 : 표지 및 간지 포함 25쪽 이내
- ※ 양면 인쇄 시 2쪽으로 간주하며, 쪽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2쪽)부터 **하단중앙**에 표기(쪽번호 크기는 10포인트)

(4) 지 질 : 백상지[표지(코팅지 사용 가능), 내용지(코팅지 등 사용 불가)]

(5) 작성 내용

① 표지 :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용역"만 기재

② 목차

③ 3차원이미지(A3 사이즈로 작성)

④ 설계개요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서식6)

-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7)

⑤ 대지현황분석

⑥ 건축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⑦ 도면

※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개·보수),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X축→Y 축순), 분야별 도면 순으로 작성

⑧ 구조, 토목, 조경 및 외부공간,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⑨ 친환경계획, 에너지절약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계획

⑩ 추정 예상공사비 산출서 및 개략내역서(서식9)

⑪ 관련법규 검토(서식 8)

4. 심사시 불이익처분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불이익 처분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점 등 불이익 처분한다.

4.1 불이익 처분 적용방법

- 1) 실격처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시작전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대상작품 및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결정하며, 실격 판정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감점처리는 작품 평가후에 발주기관에서 **감점** 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감점** 판정사항은 평가결과에 합산한다.

4.2 불이익 처분기준

구분	항 목	벌칙규정
법규 위반	- 건축관계법규위반(직통계단·피난계단의설치, 진입도로, 공개공지, 승강기설치, 부설주차장, 건축선 등) 및 도시계획 위반	-1점/건당
	- 기타 관계법규 위반	-0.5점/건당
지침 위반	- 제출도서에 응모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표현한 작품(특정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	-실격
	- 추정공사비 초과	-0.5점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0.2점/도서종류별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0.2점/매당
	- 제출도서 누락	-0.4점/부수당
	- 그 외 지침상 감점을 언급한 사항	-0.2점/건당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기준

5.1 심사위원회 운영

- 1) 심사위원 선정 및 공개
 - (1)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에서 선정하여 공모 공고시 사전공개한다.
 - (2) 심사위원 구성 : 건축계획·설계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 9명
※ 심사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2) 심사위원장 선정
 -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1)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9명중 5명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2)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심사과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활동으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입회할 수 있다.
 - (4) 작품선정을 위한 논의과정은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진행하되 심사내용은 녹음할 수 있다.
 - (5) 심사점수와 평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4) 기타
 - (1)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 응모자의 작품 설명

- 1) 작품설명 방법

- (1) 발표자는 기 제출한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으로 발표하며, 설명시간은 작품별로 5분 이내로 한다.
- (2) 발표자는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설계공모 관련 용역책임자 등 실무자 권장)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발표내용은 작품특징 및 설계의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2) 기타

- (1) 작품발표 순서는 별도 공지일에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2) 발표자는 심사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작품 설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시에는 발주자는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5.3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과 평가기준은 아래 『5.4 작품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다.

5.4 작품심사기준

1)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은 아래의 배점 기준으로 하며,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건축기획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평면 계획	○ 배치 및 평면계획의 효율성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30)
공간 계획	○ 내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20)
내부계획의 조화	○ 내부용도간 연계 및 조화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20)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존목지 및 조경시설 활용계획 ○ 구조안전성 및 공사비용 절감 등 경제성	(25)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3) 절차기준

- (1)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대상작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하며,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심사위원회는 표결방식에 의해 공모안 중 채점대상 작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회는 채점대상 작품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작품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 (4)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후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가감점대상 및 가감점사유를 심의하여 **감점**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5) 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에 대한 『작품심사 결과』와 『감점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을 결정한다.

4) 항목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 ① 채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한다.
- ②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감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 ③ 상대평가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 10%를 차등채점(수 100점, 우 90점, 미 80점, 양 70점, 가 60점으로 채점)하며, 채점 대상 작품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	∴	∴	∴	∴

※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리고 심사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심사위원 환산평점에 내부 가·감점평가점수를 반영한 점수로 산정한다

6. 당선작 발표 및 보상 등

6.1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03월31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에 발표한다.(발표일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예정)

6.2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 1) 최우수작(당선작 - 1점) :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 2) 우수작 및 가작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고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5이하	1	우수작 : 3,000만원	부가세 포함
	6~10	2	우수작 : 3,600만원 가 작 : 2,700만원	
	11이상	3	우수작 : 3,600만원 가 작 : 2,700만원 가 작 : 1,800만원	

비고 :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작품(우수작 및 가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3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7. 기 타

7.1 당선자의 의무

-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내용서” 를 준수해 설계하여야 한다.
- 4)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7.2 저작권

-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 될 수 있다.
- 2) 입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저작권은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 및 홍보사용권, 특허권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7.3 작품 전시

필요시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으며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응모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만 전시할 수 있다.

7.4 기본 및 실시설계권 차점자 부여

당선작의 설계자가 자의 등의 사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 수령 보상은 반환한다.

7.5 작품 반환

- 1) 응모 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2)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6 유의사항

-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3) 입상자는 입상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요청을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7 기타 설계공모 및 설계 관련 지침

-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각종)서식

8.1	응모신청서	[서식 1]
8.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
8.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8.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8.5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서식 5]
8.6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6]
8.7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7]
8.8	관련 법규 검토서	[서식 8]
8.9	추정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9]
8.10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0]

[서식1]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사무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FAX)	
<p>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p> <p>※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2] 및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3] 를 첨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4. 00. 00.</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대표자)</p> <p>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절 취 선 -----</p>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명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타플랜 설계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14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건축사)	(인)	신청 접수번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E-MAIL	
지침서 (Page)	질의내용		
	<p>※ 질의서는 서울시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infra.seoul.go.kr /기반시설건설/기반시설소통방/현장자료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회신 내용은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부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합니다.</p>		

[서식5]

설계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화번호 (FAX번호)		3) E-MAIL 주소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p>위와 같이 서울창업허브 및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300px;">2015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p>			
<p>구비서류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설계도면 20부. 3. 3차원이미지 CD 4. CD 1Set</p>			
----- (인) ----- (절취선) ----- (인) -----			
설계공모 작품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사무소명		법인등록 번호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식6]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명 칭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m ²	
	도 로 현 황		
	연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륜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서식7]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m ²)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8]

관련 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9]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

□ 공 사 명 : 서울창업허브 조성공사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 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 공사 금액							

[서식10]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